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 결 정 문

---

사건번호: KR-2000213

신 청 인: (주)이랜드월드

피신청인: 채수원

---

###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 청 인 : 주식회사 이랜드월드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59 이랜드월드빌딩

대표이사 최운식, 최종양

피신청인 : 채수원

부산시 부산진구 진사로77번길 633-49

분쟁 도메인이름은 “elandeats.com”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메가존 주식회사(서울시 강남구 논현로85길 46 메가존빌딩 6, 7층)에 등록되어 있다.

##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은 2020. 3. 17.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사무소(이하 '센터' 라고 함) 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20. 3. 19.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20. 3. 25.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20. 3. 19.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이하 '규정' 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 규정을 위한 절차규칙(이하 '절차규칙' 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해결센터 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 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점검하였다.

2020. 3. 26.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전자우편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20. 4. 15.임을 통지하였다. 또한 같은 날 등기우편을 통하여 절차개시 통지 및 신청서 등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020. 4. 15.까지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020. 4. 17. 센터는 보충규칙에 따라 최성준 위원을 행정패널로 선임요청 하였고, 2020. 4. 17. 행정패널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 받아 2020. 4. 17. 행정패널을 구성하였다.

### 3. 사실관계

갑 제1 내지 6호증에 의하면, 신청인은 기업 집단인 이랜드(ELAND)그룹의 사업형 지주회사로서, 이랜드그룹이 보유 및 사용하는 상표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실, 이랜드그룹은 1986년 이랜드(ELAND)라는 상호로 법인화한 이래로, 패션의류사업, 유통사업, 외식사업, 레저사업 등에서 활발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 29여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고, 아시아, 미국, 유럽 등에도 100여개의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신청인을 포함한 이랜드그룹의 2019년 총매출액은 10조원에 이르고, 패션부문 약 1,000개, 외식부문 약 650개, 유통점 50개, 호텔레저부문 25개의 지점 및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신청인은 **E:LAND E:AT**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관하여 2016. 9. 26. 지정상품을 제9류(렌즈, 모니터 등)로 하여, 2016. 10. 17. 지정서비스업을 제35류(광고업, 대형할인마트업, 의류 도매업, 스포츠용품 도매업 등)로 하여, 같은 날 지정서비스업을 제36류(은행 및 보험업, 부동산관리업 등)로 하여, 같은 날 지정서비스업을 제38류(인터넷포털서비스업, 인터넷방송업 등)로 하여, 같은 날 지정서비스업을 제42류(패션디자인업, 웹사이트유지관리업, 식품연구업 등)로 하여, 2016. 12. 19. 지정상품을 제9류(전자쿠폰)로 하여, 같은 날 지정상품을 제16류(스티커, 인쇄물 등)로 하여 각 상표등록 및 서비스표등록을 한

**E:LAND E:AT**

사실(신청인은 상표 및 서비스표를 지정상품 제9류에 대한 것 외에는 모두 2016. 2. 4.에 등록출원 하였다),




신청인은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관하여 2016. 11. 10. 지정상품을 제9류(렌즈, 모니터 등)로 하여, 2017. 2. 21. 지정서비스업을 제36류(은행 및 보험업, 부동산관리업 등)로 하여, 같은 날 지정서비스업을 제38류(인터넷포털서비스업, 인터넷방송업 등)로 하여, 같은 날 지정서비스업을 제42류(패션디자인업, 웹사이트유지관리업, 식품연구업 등)로 하여, 2017. 3. 23. 지정상품을 제9류(전자쿠폰)로 하여, 2017. 5. 31. 지정서비스업을 제35류(광고업, 대형할인마트업, 의류 도매업, 스포츠용구 도매업 등)로 하여 각 상표등록 및



서비스표등록을 한 사실, 신청인은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관하여 2016. 11. 10. 지정상품을 제9류(렌즈, 모니터 등)로 하여, 2017. 2. 21. 지정서비스업을 제36류(은행 및 보험업, 부동산관리업 등)로 하여, 같은 날 지정서비스업을 제38류(인터넷포털서비스업, 인터넷방송업 등)로 하여, 같은 날 지정서비스업을 제42류(패션디자인업, 웹사이트유지관리업, 식품연구업 등)로 하여, 2017. 3. 23. 지정상품을 제9류(전자쿠폰)로 하여, 2017. 5. 31. 지정서비스업을 제35류(광고업, 대형할인마트업, 의류 도매업,


스포츠용구 도매업 등)로 하여 각 상표등록 및 서비스표등록을



한 사실, 신청인은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관하여 2016. 11. 10. 지정상품을 제9류(렌즈, 모니터 등)로 하여, 2017. 1. 19. 지정서비스업을 제36류(은행 및 보험업, 부동산관리업 등)로 하여, 같은 날 지정서비스업을 제38류(인터넷포털서비스업, 인터넷방송업 등)로 하여, 같은 날 지정서비스업을 제42류(패션디자인업, 웹사이트유지관리업, 식품연구업 등)로 하여, 2017. 2. 16. 지정상품을 제9류(전자쿠폰)로 하여, 2017. 3. 23. 지정서비스업을 제35류(광고업, 대형할인마트업, 의류 도매업, 스포츠용구 도매업 등)로 하여 각 상표등록 및 서비스표등록을 한 사실,

신청인은 2017년경부터 외식사업의 마케팅에



 등의 표장을 고객포인트카드, 스마트폰 어플 등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 이랜드그룹은 2019. 7. 1. 주식회사 이랜드파크를 분할하여 본격적으로 외식산업 독립법인인 주식회사 이랜드이츠(ELAND EATS Co., Ltd)를 설립하고 현재 13여개의 브랜드로 전국 수백개 매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갑 제7호증, 한국인터넷진흥원 Whois 검색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 이름(elandeats.com)을 2019. 4. 11. 등록기관 메가존 주식회사에 등록한 사실,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이후 분쟁 도메인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4. 당사자들의 주장

##### A. 신청인

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분쟁 도메인 이름의 2단계 중 “eland” 는 신청인이 속해 있는 이랜드그룹이 1980년경부터 사용하여 온 상호이고, 분쟁 도메인 이름의 2단계 “elandeats” 는 신청인의 등록상표 및 등록서비스표와 복수형을 쓸 때 붙이는 “s” 를 붙인 것 외에는 동일하며, 또한 신청인이 속해 있는 이랜드그룹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이랜드이츠(ELAND EATS Co., Ltd)의 상호와 동일하고, (2) 피신청인은 “eland” 또는 “elandeats” 에 대해 아무런 권리나 적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분쟁 도메인 이름의 이전 대가로 도메인 이름 등록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비싼 금액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1년 이상 방치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기 보다는 신청인의 도메인 이름 등록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 또는 분쟁 도메인이름의 판매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규정 제4조 (a)항에 의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분쟁 도메인이름을 이전하여야 한다.

## B.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 5.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논점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 A. 상표·서비스표와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

위 3항에서 인정한 것처럼, 신청인은 2016. 9.부터 2017. 5. 사

이에

E:LAND E:AT



상표 및 서비스표에

관하여 다양한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업에 대해 상표등록 및 서비스표등록을 하였는데, 위 각 상표 및 서비스표는 E자와 L자 사이 및 E자와 A자 사이에 : 이 있거나 E자를 이용한 포크 모양의 도형이 부기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반 수요자들은 위 각 상표 및 서비스표 자체 또는 그 요부를 “ELAND EAT” 로 인식할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2019. 4. 11. 등록된 분쟁 도메인이름의 2단계 부분인 “elandeats” 는 신청인의 상표 및 서비스표의 문자 내지 그 요부인 “ELAND EAT” 를 소문자로 표기한 것에 복수형을 만들 때 붙이는 “s” 를 더하였을 뿐이고, 여기에 “ELAND” 가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진 패션의류 및 유통 분야 기업집단의 명칭이라는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분쟁 도메인이름의 2단계 부분 “elandeats” 는 신청인이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인

E:LAND E:AT

등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



익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아래 C항에서 살펴보는 바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위 3항에서 인정한 것처럼,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기 오래 전부터 “ELAND”는 우리나라에서 패션의류 및 유통 분야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상호 및 상표(서비스표)이어서,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당시 신청인을 비롯해 신청인이 속해 있는 이랜드그룹이 “ELAND”는 물론이고 “ELAND”에 리테일, 건설, 파크 등의 보통명칭을 더한 것을 상호나 상표로 사용하여 오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역시 위 3항에서 인정한 것처럼 이랜드그룹은 분쟁 도메인이름이 등록된 2019. 4. 11. 훨씬 이전부터 외식 사업을 하여 오면서 지주회사인 신청인 명의로 2016.

11.부터 2017. 5. 사이에  ,  에 관하여 상표등록 및 서비스표등록을 하고 해당 계열사가 위 등록상표 및 등록서비스표를 외식사업의 마케팅에 고객포인트카드, 스마트폰 어플 등으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피신청인은 이랜드그룹이

 ,  ,  ,  에

관하여 상표등록 및 서비스표등록을 하고 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잘 알고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더욱이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후 1년이 되도록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있고, 갑 제8호증에 의하면, 신청인의 담당자가 2020. 3. 3. 피신청인에게 분쟁 도메인이름의 매수 제안을 하자, 피신청인은 미화 10,000달러에 매도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을 그 등록 및 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에 매도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가지고 있는 상표 및 서비스표의 문자 “ELANDEAT”에 복수형을 만들 때 붙이는 “s”를 더하여(이는 이랜드그룹의 계열사의 상호이기도 하다)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또는 신청인에게 분쟁 도메인이름을 높은 대가를 받고 판매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등록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분쟁 도메인이름은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

#### D. 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위 3항에서 인정한 것처럼, 신청인은 이랜드그룹의 사업형 지주 회사로서 이랜드그룹이 보유 및 사용하는 상표를 등록하여 관리

하고 있고, 신청인은 E:LAND E:AT



E:LAND E:AT



의 상표권자 및 서비스표권자이

며, 이랜드그룹 계열사로 주식회사 이랜드이츠(ELAND EATS Co., Ltd)가 있으므로, 신청인이 ‘규정’ 제4조 (a)항의 (i), (ii), (iii) 요건을 모두 입증한 이상, 신청인은 ‘규정’ 제4조 (i)항에 의하여 피신청인에 대해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 6. 결정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a)항,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분쟁 도메인이름인 <elandeats.com>을 이전 할 것을 결정한다.



1인 행정패널

최성준

결정일: 2020년 5월 4일